

한 국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p>* CPC (UN잠정중심상품분류: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통계사무소, 1991) 번호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업종이 CPC 번호에 의하여 분류된 서비스분야 또는 업종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냄.</p> <p>약속안함*은 기술적 실행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안함을 의미함.</p>			
<p>이 양허표에 포함된 전분야</p>	<p>3)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구주를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새로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p>	<p>3) 토지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i)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p> <p>(ii)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적합한 영업목적으로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 활동과정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한 토지 - 해당 법상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을 갖추기 위한 토지 <p>세계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자격은 관련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기업에 제한될 수 있음.</p> <p>연구 개발 보조금은 약속 안함.</p>	<p>3)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대한민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다음과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단기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p> <p>A. 기업내 전근자 (ICT)</p> <p>대한민국에 설립된 자회사·지사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의 하나인 자:</p> <p>(i) 임원 -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상급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단지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를 받는 자</p> <p>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아니함.</p> <p>(ii) 고위 관리자 - 조직 내에서 그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를 1차적으로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이에 대한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p> <p>고위 관리자는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한 일선 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1차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지 아니함.</p>	<p>4) 기업내 전근자 (ICT), 기업인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계약 서비스 공급자 (CSS)는 약속 안함.</p> <p>토지취득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p> <p>세계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자격은 관련 법상 거주자에 제한될 수 있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투명성을 위한 주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 이상 보유한 기업, 주식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2. 지사는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서 정의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다른 WTO 회원국 영역 내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3. 제후회사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는 두개의 자회사 중의 하나, 유한회사, 회사 또는 다른 법인의 사원으로 양 회사 각각의 총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총 투자의 50%의 이상의 책임을 지는 주주 단체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두개의 법인 중 하나로 정의함. 	<p>(iii) 전문가-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관리 등에 독립적인 지식을 가진 자</p> <p>A항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3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에 의하여 상기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체류기간의 갱신이 가능함.</p>		
	<p>B. 기업인 방문자(BV)</p> <p>A항 (i) 또는 (ii)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이며, 대한민국 내에 서비스공급자의 사무소, 지점, 자회사 등이 없어야 하며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p> <p>C. 서비스 판매자(SS)</p> <p>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이며, 일반 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p> <p>B항과 C항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계약 서비스 공급자 (CSS) - 법인의 피고용인</p> <p>대한민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임.</p> <p>다음의 조건과 세부 분야에 기재된 추가 조건의 제약을 받음.1)</p> <p>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대한민국 법인과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서비스 공급 계약을 취득하여야 함. 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부합하여야 함.</p> <p>입국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그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입국허가 신청 직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함.</p> <p>자연인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요구 조건 및 모든 당사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능력을 기초로 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p> <p>자연인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됨.</p>		

1) D 유형의 수평적 또는 구체적 약속은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약속은 구체적 업종에 달리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적 제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p> <p>계약은 대한민국의 직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행위 또는 업종에서 체결될 것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WTO 회원국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설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설비 외의 산업 설비 또는 기계의 설치, 유지,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물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및 환경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대한민국의 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에 회원 계약을 통한 외국의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의 훈련, 감사기술의 이전 및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공동 계약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컨설팅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투명성을 위한 주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국과 단기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함. 2.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약속은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p>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 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 환경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엔지니어링(CPC 8672, 8673) <p>D 유형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기간 동안 한정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I. 분야별 구체적 약속</p> <p>1. 사업 서비스</p> <p>A. <u>전문직 서비스</u></p> <p>a. 법률서비스 (CPC 861*)</p> <p>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p> <p>(i) 법원 및 여타 정부기관에서의 법령 절차를 위한 변호 및 동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p> <p>(ii) 공증행위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변호</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대표 사무소 형태로만 가능.</p> <p>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상업적 주제가 요구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법자문사는 최소 연간 180일 이상 국내거주가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i) 국제 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락됨. 다만, 중재에 적용 가능한 절차 및 실체법은 외국법 자문사가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자격을 갖춘 범임.</p> <p>(ii)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락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 자문사 사무소”라는 언급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ii)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영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p> <p>(iv) 가족관계,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일방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p>			<p>이 분야에서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사무소로 하여금 이 협정에 합치되는 특정 요건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구체적인 협력약정을 체결,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p>
<p>* 주석</p> <p>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p> <p>i) 대한민국에서 외국법 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이상 활동을 하였어야 하며, 동 관할국에서의 법률직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어야 함.</p> <p>ii)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p> <p>iii)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보유하여야 함.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법률 자문법 및 관련 대통령령을 준수하여야 함.</p> <p>iv) 이 분야의 약속에서, 아세안 각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아세안 각 회원국에 본사를 둔 로펌에 한하여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국가 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독립적 법적 주체(지사,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 회사 등)는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회계, 감사,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862)</p>	<p>1) 감사서비스는 약속 안함. 2) 감사서비스는 약속 안함.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회계법인(유한책임회사)만 설립 가능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회계법인(유한책임회사)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만이 공급가능</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합격후 대한민국에서의 2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p>	<p>1)2)3) 대한민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사인 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p> <p>- 외국회계제도 및 회계감사 자문, 회계사연수, 감사기법전수, 정보교환</p> <p>4) 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동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1년까지 허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서비스 (CPC 863)	1) 세무조정서비스, 세무대리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 세무대리서비스는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세무조정반, 세무법인(유한책임회사)만 설립 가능. 세무조정서비스는 세무조정반, 세무법인(유한책임회사)에 소속된 세무사만이 공급가능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후 대한민국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d. 건축설계서비스 (CPC 8671)	1)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해 건축설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설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4)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본국의 법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정규 6개 건축사 시험과목 중 2개 과목인 건축법규와 건축설계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하면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의 취득이 가능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서비스 (CPC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a. 컴퓨터 설비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연구개발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부동산 서비스 중개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감정 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권한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 서비스			
a. 선박임대서비스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임대서비스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이하의 합작투자제에 한하여 허용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수장비서비스 (CPC 83101, 83105*) 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임대서비스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가정물품관련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한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및 여타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성분·순도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1*) 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은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은 약속 안함.	
e. 기술적진단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은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은 약속 안함.	

3) 86761 :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만을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서비스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사업관련 자문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86763, 86769 : CPC 86763, 86769 중 전기제품에 대한 검사 및 분석서비스만을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광업 부수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관련 자문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단 8411·88450·88442·88493 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인력 알선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인력 알선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 제공 가능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투명성을 위한 주석 1. 기업은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규정 및 서비스 수수료를 준수함. 2. 기업은 설립시 5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한다. 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로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사당 2천만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증가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기술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표 및 조사 서비스(CPC 867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 조사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 서비스는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도 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수선 서비스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발당청소 서비스 (CPC 874**, 단,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 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출판 서비스 (CPC 88442*) 신문, 정기 간행물 출판서비스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s. 국제회의의 용역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속기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친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88442 : 스크린인쇄, 그래픽어인쇄 및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업, 인쇄관련 서비스업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u>커뮤니케이션 서비스</u></p> <p>B. <u>쿠리어 서비스</u></p> <p>국제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p> <p>범으로 대한민국 우정국에 유보된 서비스는 제외6)</p> <p>동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p> <p>동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운항면장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사업자에게의 항공 운수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p>	<p>1) 항공 및 해로운승으로 제한됨.</p> <p>2) 제한 없음.</p> <p>3) 국제배달서비스 지원 육상기반 업무로 제한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항공 및 해로운승으로 제한됨.</p> <p>2) 제한 없음.</p> <p>3) 국제배달서비스 지원 육상기반 업무로 제한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6) 우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우정국은 신서를 수집, 처리 및 배달하는 독점권을 보유함. 그러나 이 법은 민간사업자가 상업서류 서비스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관련 서류, 또는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허용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통신서비스</p> <p>a. 음성전화서비스</p> <p>b. 팩킷 교환 데이터전송서비스</p> <p>c. 회로 교환 데이터전송 서비스</p> <p>d. 텔렉스 서비스</p> <p>e. 전신 서비스</p> <p>f. 팩시밀리 서비스</p> <p>g. 시설전용회선 서비스</p> <p>o. 기타</p> <p>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p> <p>호출 서비스</p> <p>PCS(개인통신서비스)</p> <p>IAS(인터넷접속서비스)</p> <p>PSTN(공중교환전화망)에 연결된 VoIP(인터넷 전화서비스)</p> <p>TRS(중개라디오시스템 서비스)</p> <p>무선 데이터 서비스</p>	<p>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p> <p>2) 제한 없음.</p> <p>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함</p> <p>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대표, 또는 외국인은 무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p> <p>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 모두가 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없음.</p> <p>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을 모두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p> <p>KT에 대하여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함.</p> <p>*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함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첨부된 문서 참조</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부가통신서비스 ⁷⁾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고도 팩시밀리 (저장·전송·저장 및 재생 포함)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자료 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 ⁹⁾

7) 부가통신서비스라 함은 기간통신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8)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가 포함되지 아니함.

9) 이용자의 데이터를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레кс, 팩스서비스 및 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외 e. 음반 제작 및 배급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일반 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자에 대하여 강제 의무 하도급 제도가 적용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서비스¹⁰⁾ A.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단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총포도검·화약류 유통업, 유통업, 골동품 및 예술품 유통업, 지역당국이 공공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수축산물 공공도매시장의 개설, 운영 및 그 안에서의 유통서비스는 제외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u>도매서비스</u> (CPC 622, 다만, 62211, 62223종 곡물, 62229 종 곡분, 인삼 및 홍삼 도매업과 62276종 비료도매업은 제외)</p>	<p>1)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및 Mode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 업종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름.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C. <u>소매서비스</u> CPC 6111, 61130, 61210, 613*(LPG와 관련된 소매업 및 주유소업 제외), 631*(담배, 쌀, 인삼, 홍삼, 소매업 제외), 632</p>	<p>1)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및 Mode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주요 기준: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절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프렌차이징</u> (CPC 8929*) ¹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투명성을 위한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서비스에 관련됨.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의약품 공급(약국)은 공공 보건 보호의 목적에서 허가받음 약사에 대해서만 허용됨.			
5. 교육서비스¹²⁾			
C. <u>고등 교육서비스</u>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 교육서비스. 보건·의료관련 및 유·초·중등교원 양성 교육서비스, 법학전문대학원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다만 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 - 첨부 I 에 명기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 - 수도권지역에 기술대학,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학교 신설은 불가 -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야에 있어 외국 공인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대학 또는 당해 국가 정부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이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을 제한 가능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프렌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에 도매 및 소매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12) 시장절근과 내국인 대우에 관한 양허사항은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자격의 취득 및 개업을 위한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학교법인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

첨부 I (고등 교육 서비스)

1. 다음 교육기관의 형태만을 포함함. (방송통신대학교와 원격대학은 제외)

- a) 전문대학(기술전문학교 제외) :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2-3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
- b)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6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
- c)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술 또는 전문적인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
- d) 기술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 근로자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마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 과정을 사내에 설치한 고등교육기관
- e)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u>성인교육서비스(CPC 924**)</u></p> <p>사립 성인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교육서비스</p> <p>국내외 학위수여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정부지원 직업 훈련서비스, 방송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제외</p> <p>또한,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제외</p>	<p>1) 보긴·의료 관련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 첨부 2에 명기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 - 수도권 내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의 연수시설에 대한 신설, 증설 및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보긴·의료 관련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첨부 II
(성인 교육 서비스)

1. 다음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의 형태만 포함

- a)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아래의 과정을 교습하는 시설을 의미함. 다만, 정규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소속 직원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 1) 산업기반기술계열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2) 산업응용기술계열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3) 정보처리기술계열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 4) 간호보조기술계열 : 간호조무사
 - 5) 문화관광계열 :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6) 외국어계열 : 어학, 통역, 번역
 - 7) 인문사회계열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통계, 성인고지
 - 8) 경영관리계열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9) 사무관리계열 :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클씨
 - 10) 예능계열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응변, 화술, 모텔,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에
- b)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로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만을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서비스			
A. 폐수 서비스 폐수처리서비스 (CPC 9401*) ¹³⁾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¹⁴⁾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베기가스 정화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¹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토질개선 및 지하수정화 서비스 (CPC 940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자문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3) 9401*: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14)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15)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설명</p> <p>1. 금융분야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분류에 따라 재분류되었으므로, 업종의 순서는 GATS/SC/Suppl.3/Rev.1의 약속의 순서와 다르다.</p> <p>2. 업종별 기재사항은 오직 현존하는 국내 금융서비스에만 적용된다.</p>			
<p>7. 금융서비스</p> <p>다음 조치들은 금융서비스 모든 분야에 적용됨.</p> <p>(1) GATS 금융서비스 협정 부속서 2(a) 항에 의거한 건전성 이유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모회사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기금 요건, 영업인의 자격, 영업 활동을 위한 면허 및 승인 등을 포함한 비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2)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과 같은 관련 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없음.</p> <p>(3) 국경간 공급, 소비자 이동을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시 원화결제는 금지됨.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의 원화표시, 결제서비스만 취급 가능. 비거주자와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되는 거래시 허가 필요.</p> <p>(4) 지점소유 자산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지점의 자본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p> <p>(5)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p> <p>(6)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p> <p>(7)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금지됨.</p> <p>(8) 파생상품을 포함한 일부 신상품 도입은 허가를 받아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A. <u>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p> <p>(i) 직접보험</p> <p>a)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포함</p>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생명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국내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 법인은 설립 금지됨. 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이 있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손해보험</p>	<p>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국내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 법인은 설립 금지됨. 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이 있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재보험 및 재보험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 및 재보험회사가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이 있음. 국내 재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와의 합작은 금지됨.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iii)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b) 보험 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절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보험관련 보조서비스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양허함 a) 손해사정 ¹⁶⁾ b) 보험계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손해사정 또는 보험계리회사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양허함 (i) 예금 ¹⁷⁾ (ii) 대출 ¹⁸⁾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v) 보증 및 약정 (vi) 외환업무 ¹⁹⁾ (vii) 결제서비스 ²⁰⁾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를 본국에서도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만 허용됨. (다만, 금융 리스는 제외) 동일인은 관련 당국의 승인 없이 시중 은행 지분의 10%(비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4%), 지방은행 지분의 15%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100%까지 관련 당국의 승인 하에 취득 가능 ²¹⁾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소유임.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이 500만불 또는 자본금의 3%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됨.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이 있음.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16)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17) 예금의 수취, 양도가능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18)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등 일반에게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19) 외환의 발행, 송금, 추심 업무

20)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라서 은행이 행하는 어음·수표에 대한 교환·결제 업무

21) “동일인” 및 “비금융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viii)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 위탁 매매서비스</p> <p>다음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p> <p>a) 단기금융상품 (수표, 어음, CD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 (선물·옵션 포함) d) 외환·금리 상품 (스왑, 선도 금리 약정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금융 자산(금괴 포함)</p>	<p>카드론 등의 수단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은 제한됨.</p> <p>신용카드 수수료, 이자율 등 각종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일 이상이어야 함.</p> <p>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 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이 면제됨.</p> <p>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p> <p>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p> <p>금융리스, 신용공여,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배분 d) 기타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자산 관리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b) 모든 형태의 간접투자 관리 c) 보관 d) 신탁 ²²⁾ (투자일임업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고 신탁업 영위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인가(두 종류)를 받아야 함. 부동산신탁은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2)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탁을 받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xi) 신용정보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 정보회사에 대한 50%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문, 중개, 및 기타 부수 금융서비스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투자자문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제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상업적 주제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b) 신용평가 및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무보증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만 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관련서비스			
A. <u>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2, 6431*) 단, 6431 중 철도·항공운송관련 시설 서비스는 제외 ²³⁾ 공연있는 음료제공서비스 (CPC 64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여행알선대행서비스</u>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관광안내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A. <u>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극장,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그룹이나 개인 아티스트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3) 이 제외는 CPC 642상의 케이터링에 관한 약속에 영향을 주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11. 운송서비스</p> <p>A. <u>해운서비스</u>²⁴⁾</p> <p>국제운송 (CPC 7211*, 7212*)</p> <p>연안해운 제외</p>	<p>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트램프 및 그 밖의 국제 해운: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대한민국의 국기하의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주재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범에 규정된 주식회사만 허가됨. b)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p> <p>4) a) 선박승무원: 제한 없음.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항만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운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공연하게 이용이 보장됨.</p> <p>1. 수로 안내 2. 예선·도선 3. 식량·연료·급수 4. 쓰레기 취합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전기공급 등 항만에 근거를 둔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부두, 선박점안 서비스</p>
<p>투명성을 위한 주석</p>	<p>이 양허표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해운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연안운송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연안운송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항만 또는 지점과 대한민국 영역내 위치한 다른 항만 또는 지점간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및 대한민국 영역 내에 위치한 동일 항만이나 동일 지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교통으로서 동 교통이 대한민국의 수역안에 머무르는 경우를 말함.</p>		

24) 해운서비스에 관한 첨부 참조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보조서비스 해상화물취급서비스 (CPC 7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점 (CPC 748*) ²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변상의 회사로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 ²⁶⁾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5) CPC 748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외국 운수업 포함)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거래대리를 하는 사업

26) CPC 741중 항만지역에서 제공되는 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 ²⁷⁾ 해운 중개 (CPC 748*, 749*) ²⁸⁾ 선박유지 및 수선 ²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원포함 선박임대 서비스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김수·김정·김량 서비스 (CPC 7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7) CPC 748중 자기의 명의 (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28) CPC 748*, 749* :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항공 서비스</u> 컴퓨터예약시스템 (CRS) 서비스 ³⁰⁾ 항공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³¹⁾ 항공기 관리 및 수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u>철도운송서비스</u> a. 여객운송서비스 (CPC 7111) b. 화물운송서비스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함. 심사 기준: 철도산업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9)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서비스

30) 항공운송 서비스에 관한 GATS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31) 항공법 제2조 제34항(일반항공운송대리점) 및 제32항(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함. “일반항공운송대리점”은 보수를 받으며 항공운송회사를 대신하여 항공기를 통한 여객 및 화물 국제운송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타인을 위하여 여권이나 비자 획득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제외).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도로운송서비스 연안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운송서비스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 한해 발급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CPC 7131*) 오직 석유제품(LPG를 제외) 운송에 한정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운송부수서비스 b. 항만구역 이외의 창고업 (CPC 742*) 농·축·수산물 창고업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기타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화물 주선 ³²⁾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그 밖의 서비스 b. 이발 및 기타 미용 서비스 (CPC 97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2) 철도화물 주선은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말함.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계약, 화물하역, 화물 배달 등을 포함함.

참조 문서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본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것이다.

정의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a)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호장치

1.1. 통신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1.2. 보호장치

1.1.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c)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본 항은 양허한 분야에 한해, 한 공급자의 이용자들이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 접속에 적용된다.

2.2.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 (a)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 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 (c)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효율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3.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2.4.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2.5. 상호접속의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a) 언제든지, 또는
-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 포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허가 기준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a)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 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b) 개별 허가 요건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번호 및 관료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되, 특정한 정부 사용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해운서비스에 관한 첨부

1. 국제해운, 3.b):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라 함은 다른 당사국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2.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노무자가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와는 별개로 조직된 경우에는 항만노무자들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포함되는 활동에는 다음 사항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부터의 화물의 양하와 선박으로 화물의 적하
- 화물의 끈 묶기/끈 풀기
- 선적전 또는 양하후 화물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이든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활동이든지 간에 수출입 또는 화물의 일관수송과 관련 다른 당사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집/적출 작업과 수리 및 선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항만 내에 보관하는 활동

5. 해운대리점 서비스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이익을 대표하는 활동

-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하여 선하증권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감시하는 활동

7. 검수·검량·감정 서비스

- 검수서비스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하는 활동
- 검량서비스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하는 활동
- 감정서비스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